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9. 30.

발 의 자 : 오흥철·이명숙 의원
(찬성자 5인)

제안이유

- 가.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시 대표축제의 육성 및 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전문 법인·단체에게 위탁 추진하고, 나.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 실시

주요내용

- 가.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, 군·구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함.(안 제2조제3호, 제4호)
- 나.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추진 조항을 신설함.(안 제36조)
- 다.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사업(축제)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)
- 라. 군·구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8조)
- 마.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.(안 제39조)
- 바.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함.(부칙 제2조)

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.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군·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

제36조(축제의 육성)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축제의 사무위탁) ① 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·단체에게 제2조제3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할 수 있으며,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.

제38조(군·구 축제의 지원)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·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9조(축제의 평가)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(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)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 및 기능) (생략)	제2조(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
1. ~ 2 (생략)	1. ~ 2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<신설>	4. 군·구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(생략)	5. (현행 제3조와 같음)
<신설>	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
<신설>	제36조(축제의 육성)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<신설>	제37조(축제의 사무위탁) ① 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제3호의 사무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할 수 있으며,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<신설>	제38조(군·구축제의 지원)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·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	<p><신설> 제39조(축제의 평가)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외부평가(제37조의 규정에 우한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)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.</p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예술진흥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조(시책과 권장) - 제4조 (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) - 제39조(국고보조)
관련법규 정비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조례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취사항

【문화예술진흥법】

제3조 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 (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 라한다)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39조 (국고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